

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,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사항을 확대함.

3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(안 제2조)
 - 시각장애 4등급인 자가 보철용·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
- 문화재에 대한 감면(안 제4조)
 -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
-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안 제5조)
 -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연장하고,
상위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함
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안 제7조)

-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연장함
-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9조)
 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
-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(안 제9조의2)
 -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연장함
-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(안 제9조의3)
 -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추가경감률을 100분의 15로 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문화재보호법」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,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주민복지 증진 및 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생각됨.